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가단14362 판결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가단14362 판결

전문

원고

양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2. 6. 27

원심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BB은 피고로부터 국세를 고지받자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1997. 7. 28.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그의 동생인 원고에게 1997.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나.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7r단23709호로 위 가.항의 매매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1. 11.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99. 12. 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2.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자를 양BB으로 환원한 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압류등기를 경로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 기라고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1. 6. 14. 양BB을 상대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2011가단217836호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양BB은 2011. 8. 19.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2호증의 3, 갑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피고는 이 사건 전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0. 3. 12.에야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경료하였기에 위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 3. 18.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양BB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채납처분이어서 무효이며, ② 또한, 원고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한 1997. 7. 28. 이후에 경료된 이 사건 압류등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소급하여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해 놓았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어 결국 위 말소등기는 적법 한 것이며, ②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는 등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한 점유를 한 것이 아니며, 양BB의 인낙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에 대한 국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의 법리상 이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이 원인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 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가압류에 관한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9. 4. 6. 접수 제20809호로 수원지방법원

99차단12120호 가처분 결정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경로한 사실, 위 각 가처분등기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2010. 3. 12. 실효되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0. 3. 12.까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원고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압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압류에서의 이른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압류 후에 원고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 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인 무효가 아니라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는 양BB를 상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당시 등기명의를 적법하게 상실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등기 전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지도 않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양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위 점유취득시효와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을 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